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15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외교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 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79	정부	2024. 07. 22.
	2203653	이용선의원 등 10인	2024. 09. 04.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 심사소위원회(2024. 11. 27.)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28.)는 법 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 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 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법률 제 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제4호·제5호·제5의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		
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3. <삭 제>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4. <삭 제>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5. <삭 제>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5의2. <삭 제>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6. <삭 제>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